



제422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가상자산사업자를 법 적용 대상에 포함〉
■ 조승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4588호)

2025. 2.

정 무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명호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조승래의원 등 12인

나. 제 안 일 : 2024. 10. 7.

다. 회 부 일 : 2024. 10. 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금융당국·수사기관 및 가상자산사업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상자산을 매개로 한 보이스피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그 방식 또한 고도화되고 있음. 2020년 82.6억원 수준이던 가상자산 악용 보이스피싱 피해액 규모가 불과 2년만인 2022년에 199.6억원으로 2.4배 증가하는 등 그 피해도 큰 폭으로 늘어나는 추세임.

그러나 가상자산사업자의 경우 금융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보이스피싱을 방지하고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현행법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어 적극적으로 나서 대응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음

이에 가상자산사업자를 현행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고, 피해금 환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상자산을 이용한 보이스피싱에 대한 예방과 대응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파목 및 같은 조제2호 마목 신설 등).

Ⅲ. 검토의견

- 개정안은 가상자산을 이용한 행위를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포함하고, 법 적용 대상을 현행의 금융회사에서 가상자산사업자까지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조 등).¹⁾

현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금융회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금융회사등”이란----- -----.
가. ~ 다. (생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신설>	파. 「가상자산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상자산 사업자
파. (생략)	하. (현행 과목과 같음)
2.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 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欺 罔)·공갈(恐喝)함으로써 자금 또 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 자에게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 을 취하게 하는 다음 각 목의 행 위를 말한다. 다만,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 위는 제외하되, 대출의 제공·알선 ·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한다.	2. ----- ----- ----- ----- ----- ----- ----- -----.
가. ~ 라. (생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전자금융거래”란 금융회사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가 금융회사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한다.

3. (생략)

4. “사기이용계좌”란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하여 피해자의 자금이 송금·이체된 계좌, 피해자가 교부하였거나 피해자의 계좌에서 출금된 자금이 입금된 계좌 및 해당 계좌로부터 자금의 이전에 이용된 계좌를 말한다.

5. “피해금”이란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하여 피해자의 계좌에서 사기이용계좌로 송금·이체된 금전, 피해자가 교부한 금전 또는 피해자의 계좌에서 출금된 금전을 말한다.

마.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이하 “가상자산”이라 한다. 이하 같다)을 매도, 매수, 교환, 이전, 보관 또는 관리하도록 하는 행위

2의2. -----금융회사등이

-----금융회사등의-----

-----.

3. (현행과 같음)

4. -----
-----자금 또는
가상자산이 송금·이체·이전된
계좌(가상자산 거래를 위한 계정
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5. -----

-----이체·이전된 금
전 또는 가상자산(이하 “금전등”이
라 한다)-----금전
등-----
금전등-----.

6. “피해환급금”이란 피해금을 환급하기 위하여 제9조에 따라 소멸된 채권을 기초로 하여 제10조에 따라 산정되어 금융회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

7. “이용자”란 금융회사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피해구제의 신청 등) ① 제2조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수사기관은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제2조제2호다목 또는 라목에 해당하는 행위와 관련된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수사기관은 제2항에 따른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요청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 이내에 피해자 및 피해금을 특정하여 해당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피해구제의 신청

6. -----

-----금융회사등이-----
-----.

7. -----금융회사등과-----

-----.

제3조(피해구제의 신청 등) ① -----

-----송금·이체·이전한-----금융회사등-----
-----금융회사등-----

-----.

② -----
-----금융회사등-----

-----.

③ -----

-----금융회사등-----.

④ -----

및 제2항에 따른 지급정지의 요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다른 금융회사의 사기이용계좌로 피해금이 송금·이체된 경우 해당 금융회사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급정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⑤ (생략)

제4조(지급정지) ① 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거래내역 등의 확인을 통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즉시 해당 사기이용계좌의 전부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 5. (생략)

② 금융회사는 제1항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를 한 경우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해당 지급정지 조치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명의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지급정지 조치에 관한 사실을 공시하여야 하며, 제3호에 따른 피해자에게는 제3조제3항 또는 제6조제2항에 따른 수사기관의 통지가 있을 때에 통지하여야 한다.

1. · 2. (생략)

3. 제3조제3항 또는 제6조제2항에 따

-----금융회사등은-----금융회
사등의-----
송금 · 이체 · 이전된-----금
융회사등에-----
-----.

⑤ (현행과 같음)

제4조(지급정지) ① 금융회사등은-----

-----.

1. ~ 5. (현행과 같음)

② 금융회사등은

1. · 2. (현행과 같음)

3. -----

라 <u>금융회사</u>에 통지된 피해자 4. 피해금을 <u>송금·이체한</u> 계좌를 관리하는 <u>금융회사</u> 5.·6. (생 략) ③ <u>금융회사</u>는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여 지급정지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④ (생 략)	--<u>금융회사등</u>----- 4. -----<u>송금·이체·이전한</u>----- -----<u>금융회사등</u> 5.·6. (현행과 같음) ③ <u>금융회사등</u>은----- ----- ----- -----. ④ (현행과 같음)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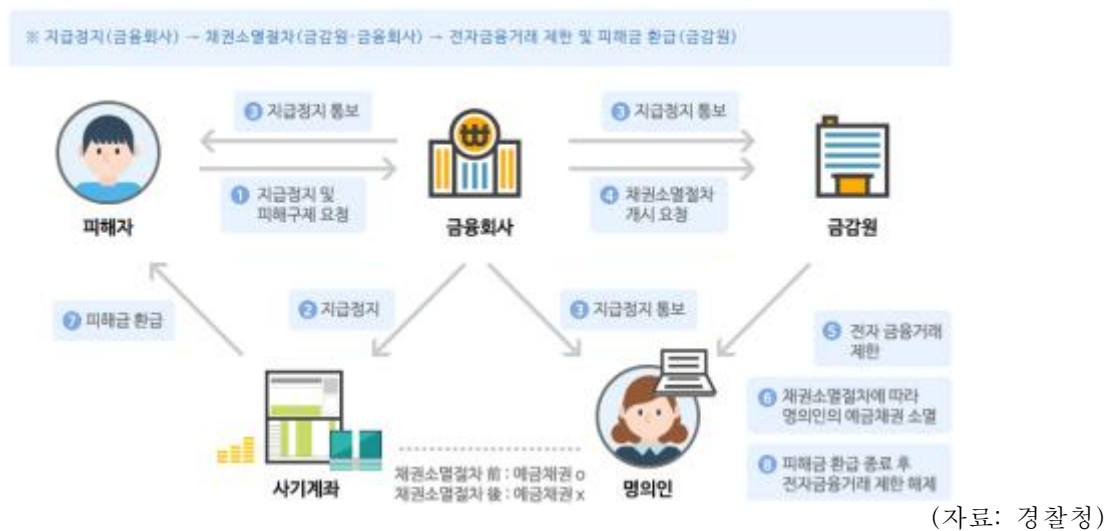
□ 현행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라 함)」은 자금의 송금·이체를 이용한 전기통신금융사기가 발생한 경우, ① 사기이용계좌를 지급정지하여 피해를 방지하고 ② 채권소멸절차를 통해 피해자에게 신속히 피해금을 환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피해자 계좌에서 사기이용계좌(사기범 계좌)로 자금이 송금·이체된 경우, 먼저 피해자의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신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거래내역 등 확인을 통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즉시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조치(자금의 송금·이체·출금 중단)를 하여 피해를 방지함.

1) 표현 수정(“금융회사”→“금융회사등” 등) 등을 포함한 전체 친구조문대비표는 보고서 마지막에 별도로 제시함.

- 이후 금융회사가 금융감독원에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의 예금채권 소멸절차 개시공고를 요청하면, 금융감독원이 개시를 공고하고 2개월간 이의제기가 없으면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의 예금채권이 소멸되어 금융회사가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환급하게 됨.

[그림 1]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절차



[표 1]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절차

절차	내용	근거조항
① 지급정지 및 피해구제 요청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사기범에게 자금을 이체한 계좌(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지급정지(입출금·이체 금지)요청 및 피해구제 신청	§3①
② 지급정지	금융회사가 보이스피싱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지급정지(입출금·이체 금지) 실시 ※ 수사기관·금융감독원의 정보제공 또는 금융회사의 자체점검 등을 근거로 지급정지도 가능	§4①
③ 지급정지 통보	금융회사가 금감원, 명의인, 피해자 등에게 지급정지 사실을 통보	§4②
④ 채권소멸절차 개시 요청	금융회사가 금감원에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의 예금채권을 소멸하기 위한 절차 개시 공고 요청	§5①
⑤ 전자금융거래 제한	금감원이 ③에 따라 통보받은 명의인을 전자금융거래 제한 대상으로 지정	§13의2

⑥ 채권소멸절차	④의 요청에 따라, 금감원이 채권소멸절차가 개시된 사실을 공고	§5②
	(이의제기 등 없을시) 2개월 후 예금채권 소멸	§9①
⑦ 피해금 환급	채권소멸 후 금감원이 14일 내 피해환급금을 산정하여 피해금 환급 결정 → 금융회사를 통해 피해금 환급	§10①
⑧ 전자금융거래 제한 종료	피해금 환급 지급이 종료된 경우 전자금융거래 제한 종료	§8

(자료: 관계부처합동, 「보이스피싱 척결 종합방안」, 2020. 6., 18쪽 재구성)

□ 최근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금융회사 계좌로 피해금을 받은 후 이를 가상자산으로 구매해 현금화하거나, 피해자가 직접 가상자산을 구매하여 사기범의 전자지갑으로 전송하도록 하는 등 가상자산을 이용한 보이스피싱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

○ 5대 가상자산거래소 보이스피싱 관련 건수 및 금액은 2023년도에 비해 2024년도에 큰폭으로 증가하였음.

[표 2] 5대 가상자산거래소 보이스피싱 건수 및 금액

(단위: 건, 백만원)

	이용자		금융회사		수사기관		합 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22	158	2,241	425	11,753	1	0.1	584	13,994
2023	64	1,660	223	7,380	0	0	287	9,040
2024	110	11,148	1,716	43,499	3	0	1,829	54,647

(자료: 금융위원회)

□ 그러나, 현행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상 피해구제 제도는 피해자와 사기범 사이에 “자금”의 송금·이체 등이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금융회사의 계좌”를 지급정지하고 명의인의 예금채권을 소멸하는 방식

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가상자산”과 “가상자산 입출금 계정”을 이용한 보이스피싱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음.

- ① 법 적용 대상인 “금융회사”에는 은행, 금융투자업자, 상호금융, 보험회사 등 금융업무를 행하는 기관만이 포함되므로 가상자산거래업자 등 가상자산사업자는 포함되지 않고 ②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정의에는 “자금”의 송금·이체 또는 교부·출금이 이루어진 경우만 포함되므로 가상자산을 이용한 행위는 포함되지 않음.²⁾
- 그 결과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피해금을 이용하여 가상자산을 구매하였거나, 피해자가 가상자산을 구매하여 사기범의 전자지갑으로 이를 전송한 경우에는 현행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융회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

나.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다.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라.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증권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바.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사.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

아.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및 수협은행

자.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차.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와 그 중앙회

카.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타.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파. 그 밖에 금융업무를 행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2.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欺罔)·공갈(恐喝)함으로써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되,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한다.

가. 자금을 송금·이체하도록 하는 행위

나.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이체하는 행위

다. 자금을 교부받거나 교부하도록 하는 행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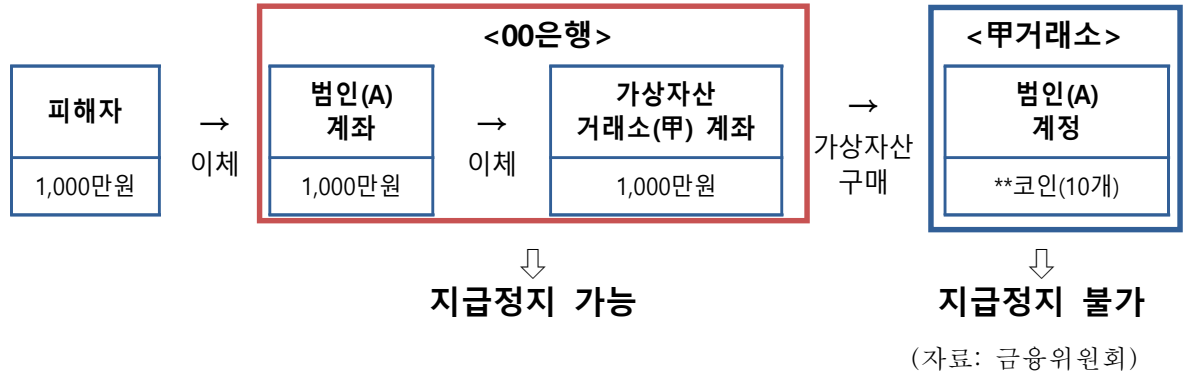
라. 자금을 출금하거나 출금하도록 하는 행위

다른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가 불가능한 상황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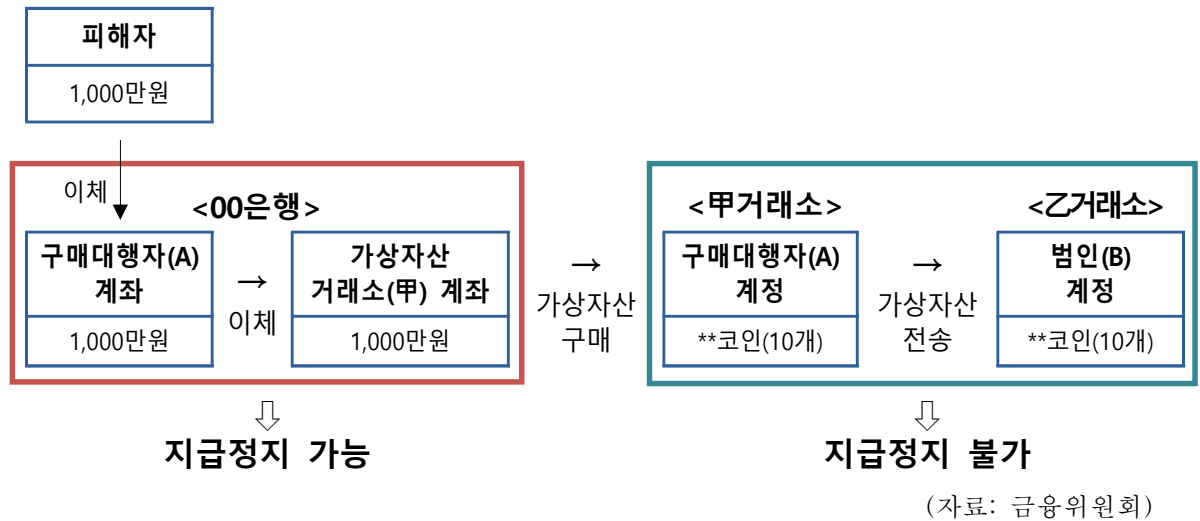
□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가상자산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유형은 크게 ① 금융회사를 이용한 방식(피해금이 현금인 경우)과 ② 피해자가 사기범의 전자지갑으로 가상자산을 직접 전송하는 방식(피해금이 가상자산인 경우)으로 구분할 수 있음.

- 먼저, 금융회사를 이용한 방식은 기존 보이스피싱 방식을 이용하여 사기범이 금융회사 계좌로 피해금을 받은 후 이를 가상자산으로 구매해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 이 과정에서 사기범이 본인의 금융회사 계좌로 피해금을 받아 가상자산을 구매하거나(유형1), 수수료를 미끼로 가상자산 구매대행자를 구하고, 구매대행자는 피해자의 돈으로 가상자산을 구매해 범인에게 전송하는 방식(유형2)으로 이루어짐.
 - 피해금이 범인 또는 구매대행자의 금융회사 또는 가상자산거래소 계좌에 남아있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가 가능하나, 피해금이 가상자산으로 전환된 이후에는 이러한 피해구제가 불가능함.

[그림 2] 가상자산 관련 보이스피싱 단계별 지급정지 가능 범위(유형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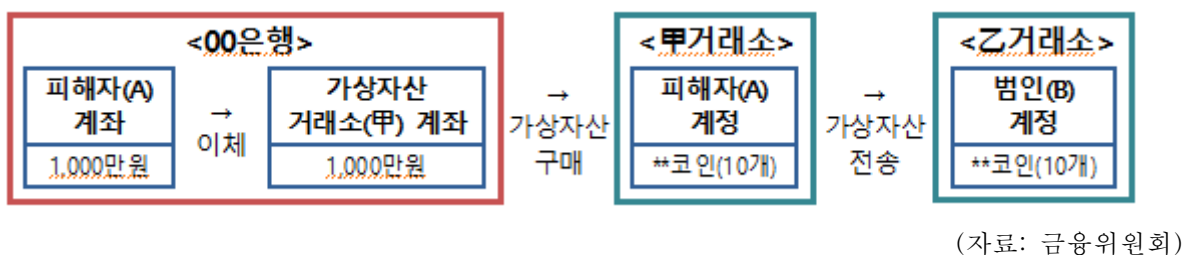


[그림 3] 가상자산 관련 보이스피싱 단계별 지급정지 가능 범위(유형2)



- 다음으로, 피해자가 본인의 가상자산거래소 계정에서 직접 가상자산을 구매해 범인의 전자지갑으로 이를 전송한 경우(유형3)에도, 가상자산거래소는 현행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는 지급정지 등의 요청을 할 수 없음.

[그림 4] 가상자산 관련 보이스피싱 단계별 지급정지 가능 범위(유형3)



□ 가상자산과 관련한 보이스피싱이 발생한 경우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른 피해구제가 이루어질 수 없으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가상자산사업자의 이용약관 등을 토대로 일부 피해구제가 이루어지고 있음.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의 가상자산에 관한 입금 또는 출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차단할 수 없도록 규정³⁾하되, 시행령⁴⁾에서 그 예외사유를 정하고 있어 가상자산거래 관련 약관에 따라 보이스피싱 관련 출금을 일부 제한할 수 있음.

-
- 3)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가상자산에 관한 임의적 입·출금 차단 금지)
①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가상자산에 관한 입금 또는 출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차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 4)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가상자산에 관한 입금 또는 출금의 차단이 허용되는 정당한 사유)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5.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예방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금을 환급하기 위해 가상자산이 입금된 때부터 72시간의 범위에서 가상자산에 관한 출금을 차단하도록 정하고 있는 가상자산사업자의 가상자산거래에 관한 약관(이하 "가상자산거래약관"이라 한다)에 따라 가상자산에 관한 출금을 차단하는 경우

「업비트 이용약관」 제17조 (이용제한 등) ② 회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면 회원 계정에 대하여 로그인 제한, 입금 제한, 출금 제한 중 하나 이상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5.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예방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금을 환급하기 위해 가상자산이 입금(원화를 입금하여 가상자산을 매수한 경우 포함)된 때부터 72시간의 범위에서 가상자산에 관한 출금을 차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
6. 자금세탁행위 등 범죄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가상자산거래가 특정금융정보법 제2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불법재산,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입금 또는 출금의 차단기간은 2개월의 범위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두 차례에 한정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7. 그 밖에 이용자 보호 및 가상자산시장의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가상자산에 관한 입금 또는 출금의 차단이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8. 기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할 때 회사에게 회원 계정에 대한 로그인 제한, 입금 제한, 출금 제한 중 하나 이상의 조치를 취할 권리 또는 의무가 있음이 명백한 경우

○ 이에 따라 가상자산거래소는 금융회사로부터 보이스피싱과 관련한 정보를 받은 경우 해당 계정에 대한 출금 정지 등을 하고 있으나,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환급하기 위한 채권소멸절차 등은 법적 근거가 부재한 관계로 적용할 수 없는 상황임.

□ 이에 개정안은 ① 이 법의 적용 대상을 가상자산사업자까지 확대하고 ②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정의를 가상자산을 이용한 행위까지 넓히려는 것으로, 가상자산을 이용한 보이스피싱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필요한 조치로 보임.

○ 금융위원회도 지난 2023년 2월 「제2차 금융분야 보이스피싱 대응방안」을 발표하면서 가상자산과 관련한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할 경우 가상자산거래소에도 금융회사와 동일한 피해구제 절차를 적용하기 위해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가상자산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를 ‘금융회사등’의 범위에 포함하여 가상자산사업자의 피해방지 책임(제2조의4)⁵⁾, 임시조치(제2조의

5)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4(금융회사의 피해 방지 책임 등) ①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임을 확인하는 조치(이하 "본인확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인 이용자가 본인확인조치를 희망하지 아니하거나 이용자가 국외에 체류하는 등의 사유로 본인확인조치를 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금융회사에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2. 해당 금융회사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가입한 저축성 예금·적금·부금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

5)6), 지급정지(제4조)7) 등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 2025. 2. 10. 기준으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⁸⁾한 가상자산사업자는 29개사임.

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을 해지하는 경우

② 금융회사는 제1항을 위반하여 본인확인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6)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5(이용자계좌에 대한 임시조치) ① 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이용자 계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체, 송금 또는 출금을 지연시키거나 일시 정지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자체점검을 상시적으로 실시하여 이용자의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의심거래계좌(이하 "피해의심거래계좌"라 한다)로 이용되는 것으로 추정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15조제3항에 따라 이용자의 계좌가 피해의심거래계좌로 추정된다는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② 금융회사는 제1항에 따라 임시조치를 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이용자에게 임시조치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고 본인확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금융회사는 제2항에 따른 본인확인조치 결과 해당 이용자의 계좌가 피해의심거래계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④ 금융회사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임시조치에 관한 통지·해제 및 본인확인조치를 한 때에는 그 내역을 서면, 녹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7)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지급정지) ① 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거래내역 등의 확인을 통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즉시 해당 사기이용계좌의 전부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3조제1항에 따른 피해구제 신청이나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지급정지 요청이 있는 경우

2. 수사기관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 등으로부터 사기이용계좌로 의심된다는 정보제공이 있는 경우

3. 제2조의5제2항에 따른 피해의심거래계좌에 대한 본인확인조치 결과 사기이용계좌로 추정되는 경우

4. 제15조제3항에 따라 사기이용계좌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금융회사는 제1항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를 한 경우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해당 지급정지 조치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명의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지급정지 조치에 관한 사실을 공시하여야 하며, 제3호에 따른 피해자에게는 제3조제3항 또는 제6조제2항에 따른 수사기관의 통지가 있는 때에 통지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라 지급정지된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이하 "명의인"이라 한다)

2. 제3조제1항에 따라 피해구제신청을 한 피해자

3. 제3조제3항 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금융회사에 통지된 피해자

4. 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5. 금융감독원

6. 수사기관. 다만, 제1항제2호에 따라 정보를 제공한 경우와 제3조제2항에 따라 지급정지를 요청한 경우에 한정한다.

③ 금융회사는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여 지급정지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급정지의 절차·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표 3]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현황(2025. 2. 10. 기준)

구분	서비스명	갯수
거래업자	업비트, 코빗, 코인원, 빗썸, 플라이빗, 고팍스, BTX, 포블, 코어닥스, 비블록, 오케이비트, 빗크몬, 프라뱅, 보라비트, 오아시스거래소, 코인빗, INEX, 돌핀, 바우맨	19
기타	코다, 케이닥, 오하이월렛, 텔리오, 커스텔라, 인피닛블록, 디에스알브이랩스, 비덱스, 하이퍼리즘, 페이코인	10

(자료: 금융정보분석원)

○ 다음으로, 개정안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대상에 기존 자금의 송금·이체 또는 교부·출금하도록 하는 행위 외에도 가상자산을 매도·매수·교환·이전·보관 또는 관리하도록 하는 행위를 포함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사기범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받아 가상자산을 구매하거나 피해자가 가상자산을 구매하여 사기범에게 이전하는 경우도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포섭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개정안과 같이 이 법의 적용 대상에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거래소를 포함하게 될 경우 앞서 살펴본 가상자산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의 상당 부분에 대해 이 법에 따른 피해구제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8)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신고) ① 가상자산사업자(이를 운영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구체적으로, 사기범이 현금으로 입금된 피해금을 활용하여 가상자산을 구매한 이후거나 피해자가 직접 사기범에게 가상자산을 전송한 이후에도 피해자의 신청 등을 통해 가상자산거래소가 직접 사기범 또는 구매대행자의 가상자산거래소 계정을 지급정지하고, 이에 대한 피해금 환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만, 개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가상자산으로 전환된 피해금 환급과 관련하여, 현행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사기범의 금융회사 계좌에 보관된 피해금전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⁹⁾, 이를 가상자산에 적용하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현행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피해금 환급을 위하여 ① 지급정지된 사기이용계좌에 대해 채권소멸절차를 진행하고, ② 이로 인해 채권소멸이 완료되면 해당 계좌에 있는 ‘금전’을 활용하여 피해자에게 피해환급금을 지급하고 있음.
- 그런데 개정안은 ‘피해금’의 범위를 가상자산에 대하여까지 확대하고 있어 사기범의 가상자산거래소 계정에 대한 지급정지

9)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피해환급금”이란 피해금을 환급하기 위하여 제9조에 따라 소멸된 채권을 기초로 하여 제10조에 따라 산정되어 금융회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

및 채권소멸절차 진행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피해환급금의 정의를 현행법과 동일하게 ‘금전’으로 한정하고 있어 채권 소멸 이후 ‘금전’이 아닌 해당 계정에 보관중인 ‘가상자산’을 피해자에게 환급하는 절차를 예정하고 있지 않음.

- 그러나 예금 등 금전과 달리, 가상자산은 보유 시점에 따른 가치변동폭이 크므로 피해자에 대한 피해환급금을 금전 형태로 지급하게 될 경우 가상자산-현금 간 환전 시점 등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나아가, 피해자의 피해금이 가상자산으로 전환된 경우 이를 환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선택에 따라 피해환급금을 금전이 아닌 피해금에 상당하는 가상자산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방안도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임.
- 금융위원회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적용 대상에 가상자산거래소를 포함하는 개정 내용을 전반적으로 수용하나, 가상자산의 환급 방식에 대한 기본 원칙(현물반환 또는 처분 후 현금반환)을 논의하여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문 의 처
02)6788-5108